

17세기 순천지역 慶州鄭氏家の 사회 경제적 기반

- 16세기의 문중활동과 康熙十九年記 和會文記의 검토 -

조원래*

目次

I. 머리말	IV. 17세기 순천부 경주정씨의 사회적 위치
II. 경주정씨 고문서 및 관련자료	V. 맺음말
III. 16세기 慶州鄭氏家の 문중활동과 1680년 和會文記	

요약

이 논문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겸 순천지방사 연구의 일환으로 쓰여진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임란 전후의 순천역 재지사족의 성분과 그 대체적인 존재양태를 밝힌 연구결과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나 토지소유의 실상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1680年記 경주정씨의 분재기와 財主 정빈의 告身教旨類 문서들이 발굴됨에 따라 부분적이거나 그 가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1680년기 분재기를 분석하여, 유관 고문서 및 관련자료들을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17세기 순천지역의 사족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주정씨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6세기초 남원으로부터 순천에 來入한 경주정씨는 임진왜란을 거친 뒤 재지사족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대표적인 예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가의 형제·子姪들이 관내의 전라좌수영에 자진종군하여 집단적인 의병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모두 뚜렷한 군공

* 순천대 사학과 교수

을 세웠다. 그들에게는 공훈에 따른 관직이 제수되었고, 그 중에서도 몇 차례의 지방관을 역임한 정빈의 경우에 임란 이후 정씨가문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600두락(약 30결)이 넘는 전답과 50여구에 달하는 노비를 상속재산으로 남겨 손자 3형제에게 均分하였다. 전답과 노비의 대부분은 조상전래의 재산으로 보이지만, 남원지역에 소재한 전답 133두락의 토지는 정빈의 母邊傳來 재산이었다. 외조부모 봉사조의 전답을 제외한 토지, 즉 순천 관내 10개 지역과 남원부 2개지역에 흩어진 전답들을 작계는 1束 단위까지 나누어 평분하였다.

정빈의 가계를 중심으로 한 17세기 순천지역의 경주정씨가문은 임진왜란 7년전쟁에서 세운 화려한 전공과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사회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따라서 난후에 작성된 향안에는 문중의 유력한 인사들이 대를 이어 입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중 유력가문들과의 통혼권을 형성, 순천지역 명문사족으로서의 위치를 견지하였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재지사족, 慶州鄭氏家, 鄭愼, 화회문기, 平分, 향안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순천도호부는 전라도 56관중 4개의 도호부관 가운데 하나로서 호구상 전주부와 나주목 다음가는 巨邑이었다.¹⁾ 해륙이 어우러진 연해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라 하여 소강남이란 별칭을 갖고 있었던 지방이다. 그리고 전라도 최초의 사액서원이었던 김굉필 제향의 옥천서원이 자리잡고 있어 일찍부터 흥학의 전통이 성했던 고을이었다. 따라서 순천향교는 많은 전적과 다양한 고문서를 소장한 가운데 이를 지역사학계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연구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²⁾ 이와 함께 조선시대 재지사족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이 쏠려 임란 전후 순천사족의 존재양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³⁾

이와 같은 지역적 배경과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순천의 경주정씨 집안에 소장된 『康熙十九年記 和會文記』를 분석, 17세기 경주정씨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순천의 경주정씨는 조선시대 순천부의 향권을 주도했던 7성 8문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못한 것이 재지사족의 경제적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경주정씨가의 분재기록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이를 통하여 부분적이거나 조선후기 순천지역 사족가문의 경제적 실상이 드

- 1) 조선후기의 예이지만, 『여지도서』(1759, 영조 35)에 의하면 당시 순천의 호구수는 가구 14,119호에 인구 41,869명으로서 전주(21,175호, 72,773명)와 나주(17,858호, 55,994명) 다음으로 많은 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 2) 김덕진이 순천향교에 소장된 『順天府補民庫新變節目』의 각종 절목류 고문서들을 이용하여 「조선후기 전라도 순천부의 잡역세 운용과 조달」(『경상사학』 7·8, 경상대 사학과, 1992), 「조선시대 地方官營紙所의 운영과 그 변천」(『역사학연구』 12, 전남대 사학회, 1993),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紙庫 설립과 운영」(『전남사학』 18, 전남사학회, 2002) 등을 발표하여 지방재정사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집적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순천향교사』가 편찬되어, 윤희면의 『순천향교의 설립과 그 변천과정』을 포함한 12편의 논문과 함께 순천향교에 소장해온 각종 고문서류와 관련 금석문 자료들까지 수록하였다.
- 3) 1987년 정승모에 의해 연구된 「서원·사우 및 향교조직과 지역사회체계」(『태동고전연구』 제3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에서 순천·나주지역의 재지사림과 그 조직체계의 성격이 밝혀진 다음, 임란 전후 순천지방 사족사회의 성격규명에 도움을 준 다음과 같은 글들이 나와 있다. 「조선시대 순천의 사림」(정승모, 『순천시사』 정치사회편,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16세기 순천지방의 신흥사족」(조원래, 『조선시대사학보』 14, 조선시대사학회, 2000). 「鄉執綱案을 통해 본 조선후기 순천의 鄉權推移」(정승모, 『순천향교사』, 순천향교, 2000).
- 4) 순천지역 유림사회에서는 일찍부터 흔히 ‘조정양장허리박’을 일컬어 왔는데, 옥천(순창)조씨·경주정씨·제주양씨·목천장씨·양천허씨·광산이씨와 양성이씨·상주박씨를 묶어서 지칭한 것이다.

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화회문기가 비록 1건의 분재기 자료이긴 하지만, 최초로 한 유력가문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기록이란 점에서 주변자료들을 보충할 경우에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현지 순천지역에는 비교적 풍부한 지방사 자료들이 남아 있어 주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16세기초 경주정씨가 순천입향으로부터 임진왜란시까지 가문의 대표적 인물들의 사회적 활동상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문이 임란 이후 재지사족사회에서 유력가문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680년기 화회문기를 분석하여 17세기초 순천 경주정씨가문의 핵심인물이었던 鄭賓家の 재산소유 규모와 그 실태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끝으로 임란 이후에 작성된 순천부의 향안과 청금록 등의 기록을 통하여 17세기 경주정씨가 인물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가? 가계도상의 통혼례를 통해 본 다른 사족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는 또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고 한다. 그리하여 17세기 순천 경주정씨가문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선후기 순천지방 사족사회의 일면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경주정씨 고문서 및 관련자료

「康熙十九年記 和會文記」는 최근 전라남도 동산문화재 일괄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고문서이다.⁵⁾ 이 자료는 경주정씨 孝松公派(참의공파) 정빈(1566~1640)의 종가에⁶⁾ 소장된 분재기이다. 1680년(숙종 6)에 작성된 이 문기는 가로 420cm 세로 51cm의 규격을 갖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로서 정빈의 손자, 鄭光亨 3형제의 화회문기이다. 문기의 제목에 해당되는 첫 행이 ‘康熙十九年庚’만 남고 없어진 것 외엔 문서 전문을 거의 완벽하게 확인할 수

5) 이 문서는 2005년 전라남도가 도내의 일반동산문화재 조사사업을 실시하였을 때, 동부전남지역의 조사를 담당한 순천대학교 팀(사학과 석사과정팀)에서 발굴하여 조사, 기록된 자료이다(전라남도,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I, 2005).

6) 순천시 장천동 116-9번지에 거주하는 鄭宗靈(72세)이 바로 정빈의 종손이자 문서의 소장자이다. 그는 순천향교의 전교를 지낸 유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유지이기도 하다. 임란 공신 정빈은 그의 14대조가 되며, 정빈의 손자이자 1680년 화회분집의 당사자인 정광형(1612~1658)은 그의 12대조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분재기의 소장자는 정빈의 15세손이고 光亨의 13세손이 된다.

있을 만큼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대체로 1행 30자 내외의 행초로 내려 쓰여진, 158행 분량의 이 문기는 빈의 장손 정광형 소유의 문서로 전래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순천지역에서 확인된, 17세기 최초의 분재기일 뿐 아니라 기록을 남긴 인물들의 행적과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화회문기 이외에 경주정씨 종가에는 전래의 일괄문서 가운데 약 40매에 이르는 고신·추증 교지류의 문건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25매가 정빈에게 주어진 고신교지로서 그의 관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그는 1605~1640년 순천향안에 나타난 대로 ‘봉사’ 또는 ‘전현감’ 등의 막연한 전직관인이었을 뿐인데, 이제 그의 관력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정빈의 조부 鄭承復(1514~1580)의 추증교지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내려진 외명부 추증교지들이며, 빈의 아들 鄭之授(1586~1629)의 생원백패도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서들은 1680년 분재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자료들이다.

순천 경주정씨가문의 가족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문서가 있다. 정빈의 8세손 鄭煥奎(1748~1817)가 기술한 「慶州鄭氏家狀」이 그것이다. 가로 23cm 세로 36cm의 장지에 각면 유계 10행, 모두 13면의 분량에 정연한 해서체로 쓰여진 筆本이다. 내용은 정빈의 조부인 정승복과 부친 鄭思翊 양인에 대한 행장 형식의 기록으로, 「有明朝鮮國通訓大夫咸興判官鄭公事實」과 「有明朝鮮國彰信校尉忠武衛副司直鄭公事實」 두 건으로 남아 있다. 전반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보아 찬자의 당대인 18세기말~19세기초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후손의 기록으로서는 찬사의 미사여구가 적은 반면, 兩祖의 인간관계와 가족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기록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家乘門史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순천향교에 소장된 고문서 가운데서도 조선후기 경주정씨가문의 인맥과 사회적 위치를 규명하는 데 빼놓아서는 안될 자료들이 있다. 조선후기 사족사회의 공동체 관계문서, 즉 향안류·유안류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1605년(선조 38)부터 1721년(경종 1)까지의 향안 9건과 1661년(현종 2)의 유안으로부터 1761년(영조 37)의 청금수행안에 이르기까지의 별유안·청금록·청금수행안·노유안·별안·청금부거안·향교유생안 등 다양한 명칭이 붙은 유안류 문서들이다. 이것들은 이미 단행본의 자료집으로 간행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였다.⁷⁾

고문서는 아니지만 순천지방사 자료로서, 특히 순천부의 조선시대 인물사를 연구하는 데

7) 1987년 전라남도에서 간행한 『전남의 향교』(493~510쪽)에는 1661년(현종 2)에 작성된 「유안」에서부터 1881년(고종 18)의 「鄉校祭服儒生案」까지 45건의 유안·청금록 문서가 실려 있으며, 2000년에 순천향교에서 간행한 『순천향교사』에는 1605(선조 38)년에 작성된 「萬曆三十三年正月順天府留鄉座目」에서부터 1721년(경종 1)의 「辛酉復籍座目」에 이르기까지 모두 9건의 향안이, 그리고 1732년(영조 11)~1742년(영조 18) 사이의 향집강안 및 1749년의 집강안, 또 『전남의 향교』에 실려 있었던 유안류 모두가 여기에 재수록되어 있다.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江南樂府』가 있다.⁸⁾ 이 책은 경주정씨 순천 입향조인 鄭鼎(1491~1548)로부터 정승복·鄭思媛(1553~?)·鄭思竑(1558~?) 등에 대한 행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著姓士族들에 관한 기록 역시 풍부하다는 점에서 경주정씨가 인물들의 행적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그 밖에 순천의 읍지인 『승평지』·『순천부읍지』(1792, 奎 17434, 필사본) 및 『순천씨족보』(1961년, 순천향고 석판본)·『경주정씨족보』(1738)·『경주정씨세보』(1929)를 비롯한 옥천조씨·양천허씨·주양씨·상주박씨·광산이씨·양성이씨·목천장씨의 제족보를 모두 활용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자료들을 원용하여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지나치게 세세한 각주 표기는 대부분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Ⅲ. 16세기 慶州鄭氏家の 문중활동과 1680년 和會文記

1. 경주정씨의 순천입향과 문중의 활동

16세기초 경주정씨 老松公派는 파조 知年の 증손 鄭鼎(1491~1548)가 남원으로부터 순천에 이거한 후 순천지방 著姓士族의 일가로 성장하였다. 그의 정확한 입향시기와 동기에 대하여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남하한 뒤 결혼하여 현지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묘사화때 그의 외가인 남원의 ‘다라실 丁氏’(창원정씨)가 煥과 燮 형제를 중심으로 화를 당하면서 일족이 흩어져 순천부 경내로 이거한 예가 있었다.⁹⁾ 이때 함께 남하한 그가 개성왕씨 琛의 딸을 맞아 혼인함으로써 순천에 세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8) 1784년(정조 8) 순천출신 조현범이 저술한 악부시집이며, 강남은 전라도 순천의 별칭이다. 1985년에 그것이 처음으로 알려진(조원래, 「강남악부 해제」, 『남도문화연구』 창간호,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뒤, 1991년에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에서 국역으로 간행된 이후, 특히 국문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詠史樂府와 紀俗樂府를 겸한 이 책은, 18세기의 현실에서 주류를 이루던 중화 중심 그리고 중앙과 왕실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지방사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선구적 저작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김신중, 「조현범의 <강남악부>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이 자료에 대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영사시 150여편 앞에 기록한 小序의 내용 대부분이 조선시대 순천지방사의 생생한 사료들이기 때문이다.

9) 현재 여수시 웅천동에 세거하고 있는 창원정씨 丁戒生 일가가 기묘사화 당시 남원으로부터 순천부에 남하하여 이거한 예였다.

『강남악부』는 정내의 입향사실을 기록하고, 그의 효행을 강조하여 「효자문」이라 하였으며 주위에서 그를 가리켜 ‘樂易君子’라 불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웃사람들이 크게 애석해 하였다 하니,¹⁰⁾ 입향 30년이 가까웠을 무렵 순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명종 때에 이르러 아들 승복이 무과(1544)에 급제한 다음, 선전관·옥구현감 등을 거쳐 을묘왜변이 일어난 직후에 어란진 만호로 있었을 때였다. 아직 왜변이 치성했던 1559년, 그가 추자도전투에서 대첩을 거둬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 되었다. 그 후 승복은 영덕현감과 함흥판관 등의 지방관을 역임한 뒤 순천 성남문 밖에 玉溪亭을 짓고 퇴거하였다. 이 때 그는 을사명현 임역령 등과도 교류가 있었을 만큼¹¹⁾ 在地基盤을 갖추고 있었다. 그 무렵 미암 유희춘이 을사사화에서 풀려난 후 고향 순천에서 先代의 묘역을 단장할 때, 정승복이 면포 5필을 기부하는 등 현지 유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도¹²⁾ 그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정승복이 순천의 경주정씨가문을 일으킨 인물인 것은 확실하지만,¹³⁾ 정씨가문의 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한 것은 입향 3세의 인물들에 의해서였다.

<표 1>에서 보는 대로 정승복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先娶 죽산안씨 소생 가운데 장남 思安이 無嗣로 夭逝함에 따라 차남 思翊(1542~1588)이¹⁴⁾ 승중자로서 가통을 이었다. 사익이 출생한 직후 1546년 죽산안씨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부사 金燁의 여식인 연안김씨를 맞아 사준·사횡·사정 3형제를 얻은 다음, 측실에서 사립을 두었다.

정사익은 46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昇平四隱’의 한 인물로 유명하다. 순천지방의 유림사회에서 꼽히는 조선시대의 인물 중에는 16세기의 승평사은과 17세의 ‘順天八文章’이 잘 알려져 있다. 순천 팔문장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기에선 승평사은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16세기 순천지방의 新入士族 가운데는 한훤당 金宏弼(1454~1504)을 위시한 사람과 인물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곧 승평사은이었다. 관직에 나가는 것을 기피하면서 은거한

10) 조현범, 『강남악부』 「효자문」.

11) 위의 책, 「옥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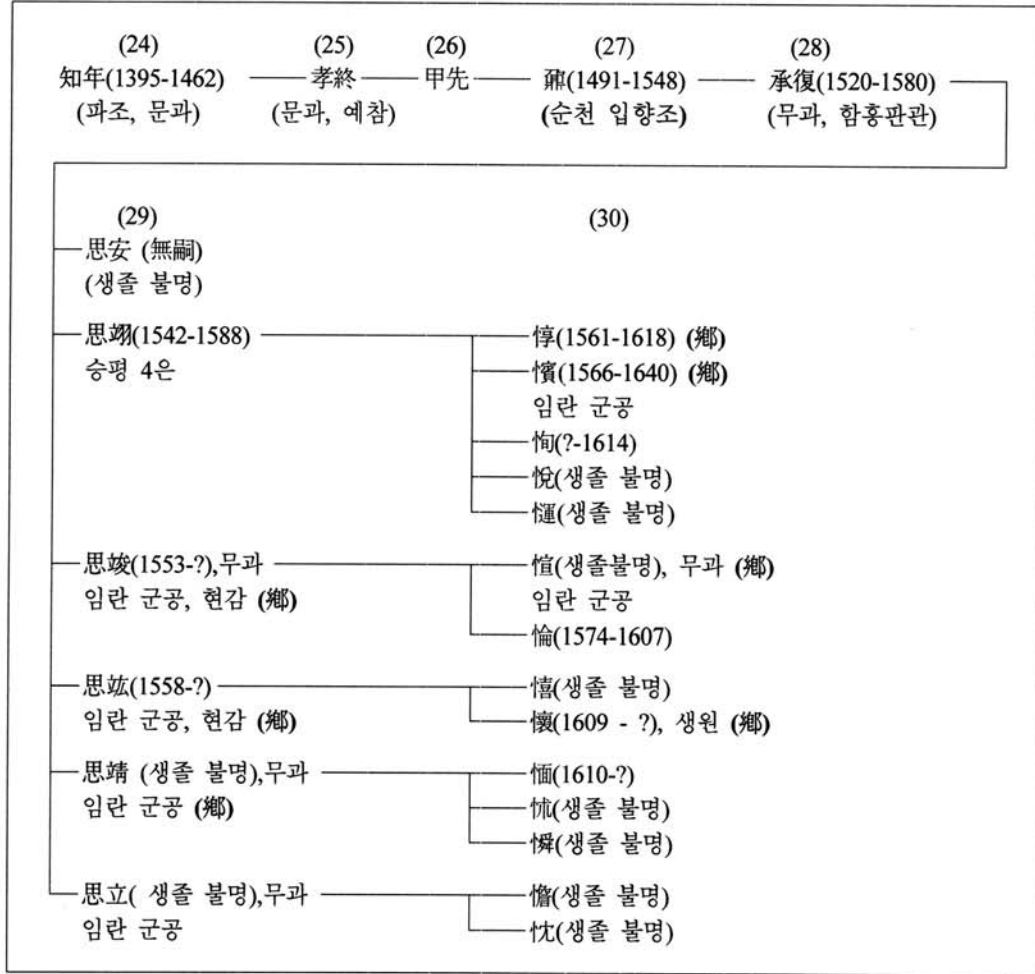
12) 『미암일기초』 2, 1570년 9월 6일.

13) 『重刊昇平誌』(1729, 洪重徵跋) 이후 순천의 諸邑誌類 인물조에 정승복의 이름이 빠진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4) 필자는 다른 글(『16세기 순천지방의 신흥사족』 『조선시대사학보』 14, 2000, 73쪽)에서, 사익을 승복의 셋째 아들로 잘못 기술한 적이 있다. 소세양의 글(『陽谷集』 권12, 「鄭君墓表」)에 “縣監先娶郡守安秀嶽之女 生二男 曰思益思安 後娶府使金燁之女 生一男 皆幼” 내용으로 보아 죽산안씨의 소생 장남 思益·차남 思安과는 관계없이 연안김씨 소생의 첫아들이 思翊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29년의 『경주정씨세보』와는 달리 1738년간 『경주정씨족보』와 정승복의 10세손 鄭煥奎(1748~1817)가撰한 『경주정씨가장』을 검토함으로써 정확한 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비들, 즉 당시 순천부의 隱逸集團이었다고 할 수 있을 이들 四隱은 진사 裴璠(1516~1589)·진사 鄭沼(1518~1572)·생원 許淹(1538~1610)과 정사익을 가리켰다.

<표 1> 경주정씨 老松公派(참의공계) 順天宗中 가계도



* (鄉)은 1605년, 또는 1623년의 순천향안에 입록된 인물들을 나타낸 것.

승평사은은 사회기에 그들 자신이 避禍士類였거나 그들의 스승들이 화를 당한 사림파의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즉 배속의 경우, 순천입향 이전에 이루어진 학연이지만 李彦迪(1491~1553)의 문인이었으니 그의 스승은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 때 평안도 강계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난 을사명현이었다. 그리고 정소는 을사

사화 당시 온집안이 禍亂에 휩쓸렸을 때, 순천에 입향한 연일정씨의 인물로서 송강 정철의 증형이자 기묘명현 金安國의 문인이었다. 허엄은 기묘사화를 계기로 순천에 들어온 양천허씨 입향조 許亨의 손자로서 그 역시 기묘명현 金安國의 문인이었다. 사은 가운데 최연소자인 정사익은 金鸞祥(1507~1570)에게 글을 배웠는데, 金鸞祥은 배숙의 스승인 이언적과 함께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을사명현의 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승평사은은 1565년(명종 20) 순천부에 金鸞祥과 조위의 유적지인 景賢堂(옥천서원의 전신)과 臨淸臺를 건립할 당시, 4인이 모두 함께 그 역사를 주동하였다고 한다.¹⁵⁾ 그 까닭은, 무오사화가 일어난 직후 1500년(연산 6)에 金鸞祥과 曹偉가 함께 평안도로부터 순천에 移配되어 왔는데, 4년째 되던 해에 조위는 병사하고 金鸞祥은 5년간의 유배기간 내내 후진을 양성하다가 1504년 갑자사화로 인해 현지에서 사사되었기 때문이다.

정사익이 1588년 세상을 떠난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씨가문을 이끌어간 인물은 연안김씨 소생의 첫째이자 사익의 손밑 아우 思堦이었다. 40세의 나이로 왜란을 맞이한 그는 무과출신의 전직 訓練院奉事였다. 당시 모친의 상중에 있었지만,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대로 세 아우와 조카 愼, 그리고 아들 愼을 이끌고 전라좌수사 이순신 휘하에 종군하였다. 2,30대의 젊은 형제·자질 5명을 앞세우고 집안의 家僮들을 동원하여 관내에 위치한 전라좌수영에 자원출전하였던 것이다. 즉 경주정씨일가의 총동원체제가 이루어진 해상의병의 활동이 개시된 것이다. 임란 7년전쟁에서 전란극복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이순신 휘하의 전라좌수군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거니와, 특히 임란 초기 전쟁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순천의 경주정씨·광산이씨·연일정씨 등이 펼친 집단적인 의병활동이야말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정사준을 주축으로 한 경주정씨의 의병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주정씨 일가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모두 설명할 겨를이 없거니와, 이순신이 직접 남긴 『임진장초』와 『난중일기초』에서 정사준의 공적과 그 형제자질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만을 거론하기로 한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초 정사준과 그 형제자질의 군공에 관련하여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다. 그 가운데 1592년에 올린 것, 두 글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보자.

(A)

순천에 거주하는 전훈련봉사 정사준은 난이 일어난 후 상중임에도 구국충정에 發奮하여 자원출전한 사람이온대 경상도와 접경한 요충지인 광양현의 錢灘에 복병장으로

15) 1572년(선조 5)에 배숙의 再從姪인 裴仁範이 쓴 「梅谷堂記」(『매곡집』 권2 부록 「매곡당기」 2)에 「甲子也爲昇平教授官 越明年乙丑也 主董玉川臨淸臺之役 同事者鄭沼許淹鄭思翊也」라고 하였다.

정하여 파견한 뒤, 무릇 매복하여 적을 방어하는 일에 특별한 묘책을 구사하여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사준은 순천부의 奮義之士 전훈련봉사 李義男 등과 약속하여 각기 義穀을 모아 모두 一船에 실어 행재소로 향했습니다. …16)

(B)

지난 9월 순천에 거주하는 起復奉事 정사준이 같은 고을의 奮義之士 교생 鄭賓 등과 약속하여 각기 의곡을 모아 한 배에 싣고 행재소로 올라갔습니다. … 해서의 수로와 風勢가 불순하여 정사준이 중로의 한파에 부딪혀서 병세가 위중져, 올라가지를 못하고 되돌아왔기에 그의 친 아우인 신의 군관 鄭思竑으로 하여금 그것을 갖고 올라가게 하였습니다.17) …

(A)는 이순신이 임진년 9월 25일에, (B)는 같은 해 12월 25일에 선조께 써올린 장계의 일부이다. 의주 행재소에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해상추진을 시도한 순천 의병활동에 대한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1차의 실패에 이어 3개월 후 재차 시도에서 성공하였음을 알려준 기록이다. (A)에서는 정사준이 자원종군한 후 다각적인 의병활동이 전개되었음을 기술하였고, (B)에서는 제1차 의곡수송시 사준을 따라 조카 빈이 동행한 사실, 그리고 제2차 수송시엔 사준을 대신하여 아우 사황이 시도하여 성공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수천리 거울바다의 풍파를 무릅쓰고 거둬 목숨을 걸었던 경주정씨 일가의 의병활동은 많은 사람들을 감탄케 하였다.18) 그 결과 사황에겐 안음현감이 제수되고 조카 빈에겐 훈련원 봉사의 관직이 내려졌다. 『임진장초』나 『난중일기』에는 사준·사황·빈 외에 의곡수송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읍지류의 기록들과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사정·사립 형제 및 사준의 장남인 愷도 1차 또는 2차시에 나누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씨일가의 활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전라좌수사 장계는 역시 정사준의 공적을 써올린 것이었다. 그는 독창적인 조총제작법을 창안하여 鐵匠人이었던 낙안수군 李必從과 순천의 사노 安成 등을 시켜 직접 총포를 제작, 전라좌수사 이순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조정에 올려 보급케 하였던 것이다.19) 임진왜란중 정사준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주정씨일가의 의병활동

16) 『이충무공전서』 권2, 「裝送戰穀狀」.

17) 위의 책, 권2, 「裝送戰穀及方物狀」.

18) 조현범, 『강남악부』의 「主兵事」 및 「勤王忠」.

19) “臣軍官訓練奉事鄭思竑 思得妙法 率治匠樂安水軍李必從 順天私奴安成(중략) 以正鐵打造 體制甚工 砲丸之烈 一如鳥銃 其線穴插火之具 雖似少異 數日內畢造 功役亦不甚難 舟師各官浦 爲先一樣造作 一柄 則前巡察使權慄處輸送 使各官一樣製造矣 當今禦敵之備 莫過於此 故正鐵鳥銃五柄 監封上送” (『이충무공전서』 권3, 「封進火砲狀」).

동은 정유재란기, 특히 이순신의 백의종군시엔 관군의 지도층과 더욱 밀접한 관계로 이어졌다. 예컨대 순천읍내에 위치한 정사준의 집에서 도원수 권율·전라도 관찰사 박홍로·전라도 병사 이복남 등이 모두 한 자리에 회동하여 숙박하면서 작전을 수립하기도 하고,²⁰⁾ 이순신이 순천에 머물고 있을 때는 매일같이 정사준·정사립·정선 등을 만나기도 하고, 종일을 정사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다.²¹⁾

논외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조선중기 재지사족사회의 두드러진 일면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경주정씨가 의병활동에서 뚜렷히 보여주는 것은 서출의 경우, 국가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군공과는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소외시켜 정당한 평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표 1>에서 보는 사립의 경우가 그 예였다. <표 1>에 나타난 대로 경주정씨가 임란 유공자 6인 가운데 思立만이 유일하게 향안 입록에서 배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정승복의 측실 소생이었기 때문이다.²²⁾ 그런데 『난중일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이순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정사립의 공적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테면 경주정씨 형제숙질 6인 가운데 『난중일기』에 그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쓰였을 뿐 아니라,²³⁾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그에게 장계문을 직접 작성케 한 것,²⁴⁾ 虜侯 李夢龜와 견주어 노골적으로 그를 두둔했던 이순신의 일기내용,²⁵⁾ 등으로 볼 때 정사립에 대한 이순신의 신임이 그 만큼 두터웠다는 것과 그의 활동 또한 그 만큼 컸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재지사족사회의 특성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분재기에 나타난 鄭愼家の 재산소유 실태

앞에서 본대로 16세기초 남원으로부터 순천에 이거한 경주정씨 老松公派(참의공계) 가문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순천지방의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입향 3세의 정사준을 주축으로 하여 사황·사정·사립 등 4형제와 빈과 선을 포함한 일가의 부자·숙질간

20) 『난중일기초』 정유년 5월 초1일. 이와 비슷한 사례는 병신년 윤8월 15일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 위의 책, 정유년 4월 27일~5월 14일 기사. 이순신과 정사준이 종일을 함께 한 것은 5월 4일 기사.

22) 1738년간 『경주정씨족보』나 1929년간 『경주정씨세보』에는 사립의 측실 여부가 불분명하나, 鄭煥奎撰 『경주정씨가장』의 「通訓大夫行威興判官鄭公事實」에 연안김씨 소생으로 3남 2녀가 있었다는 것과 “側室男思立武科泰川縣監”이라 기록되었다.

23)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살펴본 『난중일기초』의 내용에서 정사준의 이름이 보이는 기사는 날짜별로 8,9회이며, 그의 아들 정선은 3,4회 정도이다. 그러나 정사립의 경우엔 기사년 6월 초2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유년 8월 초6일까지 모두 13, 14회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4) 『난중일기초』 병신년 3월 초3일. 이외에도 갑오년 3월 초7일 및 병신년 2월 30일 기사 참조.

25) 위의 책, 을미년 9월 초하루 기사.

이 모두 이순신 휘하의 전라좌수영에 自願從軍하였다. 집단적인 의병활동에 의해 일가가 뚜렷한 군공을 세움으로써 조정의 포상과 관직이 내려지면서 가문의 사회적 기반이 다져졌다. 따라서 앞 절 <표 1>에서 보듯이 경주정씨가문의 임란 유공자 대부분이 1605년 순천부 향안에 입록되었던 것이다.

경주정씨의 임란 유공자 가운데서도 난후에 가문을 이끈 핵심인물은 정빈이었다. 그는 임진년 겨울, 27세의 나이에 숙부 사황과 함께 펼친 의병활동에서 큰 공을 세워 군사감 奉事に 제수되었다. 지금까지는 그의 구체적인 관력이 확인되지 못한 실정에서, 향안의 기록대로²⁶⁾ ‘봉사’·‘전현감’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그의 告身教旨들에 의해 사헌부 감찰·군기시 주부·낭천현감·아산현감 등 여러 관직을 거쳤음이 확인되었다.²⁷⁾ 그는 1640년 7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순천부 留鄉座目에 거듭 오르면서 鄉長으로 입록되는²⁸⁾ 등 경주정씨가 門長의 위치에 있었다. 그가 바로 1680년 화회문기의 재주로서 손자 光亨 3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준 인물이다.

정빈에게 후사가 없어 형 惇의 차남인 之授(1588~1629)를 양자로 들여 가계를 이었지만, 아들이 11년을 먼저 死去함에 따라 빈이 조부로서 10여년간을 가장으로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손자 3형제의 명목으로 화회문기가 작성된 1680년의 시점에서 볼 때 재주 정빈은 물

26) 1605년 향안에는 ‘봉사 정빈’으로, 1623년·1640년 향안에는 ‘전현감 정빈’으로 입록된 것이 그것이다.

27) 정빈의 후손 정종영씨가 소장하고 있는 정빈관련 告身教旨類 문서 약 30매 내용을 분석하여 그의 관력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임명 년월	관 직	품 계	비 고(동직 陞階 사실)
1593(선조 21)	軍資監 奉事	承仕郎(종8)	1594.4: 通仕郎(정8) 1597.1: 啓功郎(종7) 1598.1: 務功郎(정7) 1599.7: 宣務郎(종6하)
1599.8(선조 32)	忠武衛 副司果	秉節校尉(종6하)	
1600.5(선조 33)	司憲府 監察	奉訓郎(종5하)	
1608.3(선조 41)	司圃署 別提	宣教郎(종6상)	1608.8 : 承義郎(종6상) 1609.6 : 봉훈랑(종5하)
1609.7(광해 1)	軍器寺 主簿	봉훈랑	
1609.11(")	사헌부 감찰	봉훈랑	1610.4 : 通善郎(정5하)
1611.3(광해 3)	狼川縣監	奉列大夫(정4하)	1611.8 : 奉直大夫(정4상) 1612.1 : 通訓大夫(정3하)
1623.12(인조 1)	稷山縣監	통훈대부	
1628.1(인조 6)	全義縣監	통훈대부	
1629.6(인조 7)	아산현감	통훈대부	

28) 정빈은 그의 생존기간인 1605년·1623년·1640년에 향안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의 이름이 올랐는데, 「天啓三年座目」(1623)에는 ‘전현감 정빈(鄉長)’의 위치에서 입록된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론, 광형 3형제 역시 모두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즉 재산 상속인들의 처자들, 정빈의 孫婦와 증손자들의 화회에 의해 문기가 작성된 예였다.²⁹⁾

먼저 문기의 형식과 기재방식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자. 문서명을 제외한 157행의 문기구성의 순서와 내용은 일반적인 분재기 형식과 차이가 없다. 서문(11행)·봉사조(4행)·외조부모 제위질(11행)·장자깃(47행)·차자깃(35행)·차자깃(44행)·화회 참여자 서명란(5행)의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봉사조에는 祀位 노비와 墓直 노비만 배분되었고, 외조부모 제위질은 3자의 재산분급 방식과 같이 먼저 노비를 배분한 다음에 전답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노비의 기재는 ‘(奴 또는 婢)某○所生(奴 또는 婢)某 生年干支’를 명시하고, 전답의 경우에는 소재지별·지번별·필지별 순서에 따르되 전답을 섞어 기재하였다. 전답의 계량표기는 卜束의 수확량 단위를 먼저 기재한 다음, 斗升의 면적단위를 빠짐없이 병기하였다.

그런데 이 분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노비와 전답 재산을 계량적으로 세밀히 분할하여 3형제에게 분급한 사실들을 기록하였을 뿐,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입수경위 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노비의 경우에, 다른 분재기에서 흔히 보는 신노비나 衿得의 어휘가 없을 뿐 아니라 所從來의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답 역시 祖業의 토지인지 買得田畝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오래 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각자의 노비와 토지를 관리 경영하고 있었던 당사자들로서는 전혀 불필요한 문제였으리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서문의 내용부터 살펴본 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빈가의 재산규모와 그 실재에 대하여 검토할 차례이다. 서문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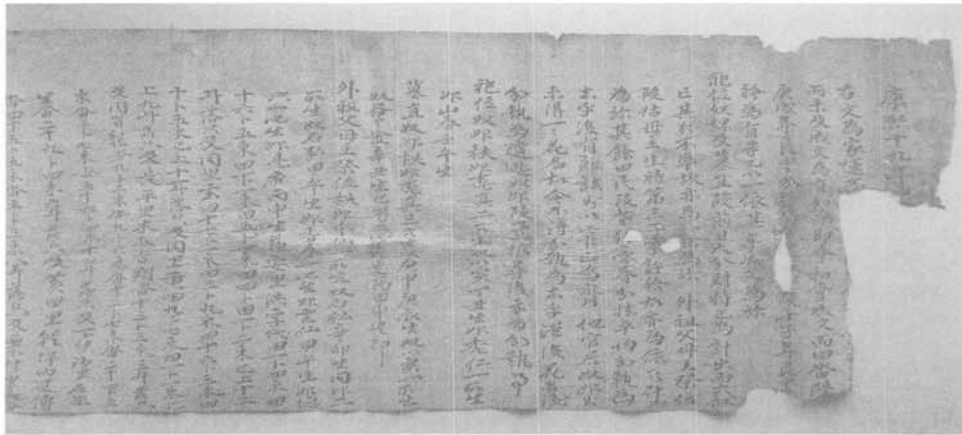
위 文記는 가운이 불운하여 ……

미처 成文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형제들이 和會하여 성문하였는데 전답은 경술년(1670)에 그 몫을 나누었고, 노비는 임자년(1672)에 분집한 바로써 각기 당시의 내용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하며 祀位奴婢와 墓直奴婢의 경우에도 전일의 大分財時에 이미 計出해 놓았지만 혹 흠어져 없어져서 그 수효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산해 기록하였다. 외조부모의 祭位 몫에 대해서는 고모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셋째 아들집에 허급하였으므로 또한 그 액수 그대로 계산해 기록하였으며, 그 나머지 전답과 노비는 肥瘠과 老弱에 따라 분간하여 平均分執하오니 훗날 잡담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건으로써 卜正하도록 한다. 타관에 거주하는 노비들은 일일이 그 이름을 확인

29) 다음 장 <표 4>의 가계도에 관련자들의 생졸년대를 명시하였지만, 1680년 분집 당시 장자 光亨은 2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의 장남 台胄가 대신 수결을 하였다. 차자 顯亨의 졸년은 불명이나 역시 그 대신 장자 廈가 참여하였으며, 三子 遇亨의 경우엔 9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처 제주양씨가 화회분집에 참여하여 인장을 찍었다. 그리고 이 문기의 증인은 태주의 3종숙인 時亨이 門長의 위치에서 참여하였고, 필집은 광형의 장자인 태주가 맡아 기록하였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집하지 못하오니 뒤에 그 이름을 확인한 대로 다시 분집할 것이며, 逃去奴婢들은 그대로 두었다가 추심한 후에 또한 분집할 것이다.³⁰⁾

서문에서 밝힌 대로 이 가문의 재산상속은 10년 전과 8년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시점이 셋째 아들 遇亨(1620~1671)이 세상을 떠난 때였다는 점에서, 그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8~10년 전의 분제사실이나 문기가 작성된 1680년의 행위는 사실상 정광형 3형제가 아닌, 그 자식들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진 예라 하겠다. 따라서 3형제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재산분할은 3형제의 부친인 정지수가 세상을 떠난 뒤, 1640년 이전 즉 정빈의 생존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40여년 전에 이루어진 재산상속이었지만 문서로 공식화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康熙十九年 和會文記의 앞부분

30) (題) 康熙十九年庚□□□……

- ① 右文爲家運不□□□……
- ② 而未及成文爲有如其即今和會成文而田畝段
- ③ 庚戌年良中分給爲遺□□段壬子年良中□
- ④ 給爲有等乙以一依其年成文爲於
- ⑤ 祀位奴婢及墓直段前日大分財時已爲計出而或散
- ⑥ 亡其數不準故亦爲計出爲於外祖父母主祭位
- ⑦ 段姑母主生時第三子家許給故亦爲依數計出
- ⑧ 爲於其餘田民段老弱膏脊分揀平均分執爲
- ⑨ 去乎後有雜談即以此下正爲齊他官居奴婢即
- ⑩ 未得一一花名故今不得分執爲去乎從後花名後
- ⑪ 分執爲遺逃奴婢段置推尋後亦爲分執事

분재의 경위와 문기작성의 배경 외에 서문에서 규정된 것들을 보면, 3남 우형가에 맡겨진 외조부모 봉제문제와 평균분집의 원칙을 강조한 것, 그리고 타관노비와 도망노비의 분재는 추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노비의 분급량은 추가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며, 평분의 원칙은 재산분할의 실제에서 확인될 문제이다. 고모 생전에 외손봉사의 소임이 3남가에 맡겨진 것은 3남 우형과 외가와의 특별한 연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그 奉祀의 대상이 정광형 3형제의 외조부모가 아니라 정빈의 외조부모인 순창조씨가 趙善種(생졸 불명)과 부인 광산이씨가 그들이었다.³¹⁾ 즉 광형 3형제에게는 외고조부모가 되는 祭位였었다. 35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빈가의 외손봉사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母邊傳來의 재산과도 관계있다.

이제 1680년 화회문기에 나타난 정빈가의 재산규모와 그 실재를 검토하기 위하여, 3형제에게 분급된 재산총량을 분석하여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1680년 鄭光亨 3형제 和會分執 통계

		奴 婢				田 畜		
		奴	婢	합	壯弱老別	田	畜	합
奉祀條	祀位秩	1	1	2	장 2			
	墓直秩	2	1	3	장 3			
	外祖父母主祭位秩	2	2	4	장 4	32두 (87.9복)	17두 (1결19.4복)	49두 (2결 7. 3복)
	長子 衿	6	8	14	장6, 약5 노1, 불명2	54두 2승 (2결 4.4복)	144두 8승 (6결 96. 5복)	199두 (9결 0.9복)
	次子 衿	8	6	14	장11, 약1, 불명2	53두 4승 (1결 92.3복)	135두 2승 (6결 81.5복)	188두 6승 (8결 73.8복)
	三子 衿	8	7	15	장10, 약2 불명3	61두 4승 (2결 94.9복)	137두 1승 (6결 88.6복)	198두 5승 (9결 83.5복)
		27	25	52	장36, 약8 노1, 불명7	201두 (7결 79.5복)	434두 6승 (21결 86복)	635두 1승 (29결 65.5복)

윗표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빈가의 재산이 노비를 제외한 전답 규모만으로도 635두락 30결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지역이 어디였던 간에 양란 직후, 특히 임진 정유란시 혹심한 전쟁피해로 인해 전라좌수영 관내가 온통 폐허화된 실정에서, 그 중심부였던 순천부의 17세기 초반의 상황이고 보면 큰 규모의 재산이었음이 분명

31) 정빈의 모친은 순창(옥천)조씨 순천 입향조 瑜(1346~1428)의 현손인 善種(配 광산이씨)의 둘째 딸이었는데, 부친이 후손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순창조씨세보』 春編, 22면).

하다. 서문에서 밝힌 대로 타관노비와 도망노비의 파악이 미진한 상태의 분재임으로 차후에 노비량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토지재산에 비해 보면 비교적 적은 규모라 하겠다. 이것은 임란 이전과는 달리, 17세기 이후 상속재산으로서 노비의 비중이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전답 위주의 재산분할이 행해지는 등 전답의 비중이 커지는,³²⁾ 재산가치 개념의 변화와도 관계있지 않았을까 한다.

<표 2>에서 보는 재산규모를 같은 시기 다른 지역의 예와 비교해 보자. 17세기 순천에 인접한 남원지역의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6~17세기 남원지방 사족들의 경제력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같은 시기 남원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족가문의 경우에 전답 303두락과 노비 48구, 그 다음이 전답 250두락과 노비 24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시 남원지방 재지사족들의 전답소유 규모는 수확량 10결 내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³³⁾

정광형 3형제의 화회문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충청도의 한 예도 아울러 살펴 보자. 1631년의 「任榮老男妹和會文記」는 문서의 규모가 가로 450cm 세로 51cm로서 순천의 것과는 그 시기와 문기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좋은 비교대상이라 하겠다. 재주의 행적이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재산의 소재가 노비와 토지를 막론하고 충청도·경기도·전라도·경상도는 물론 평안도 함경도에까지 분포하고 있어 관료출신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가문의 재산총량은 노비 373구(實數 164구, 失數 209구)에 전 12결 221n, 답 8결 58부(24석 8두락) 전답 불명 10석으로 조사되어 있다.³⁴⁾ 결부단위와 면적단위인 石斗計數가 혼재된 기재방식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전답만을 놓고서 개략적인 면적을 보면 40석~50석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토지면적으로 보면 정빈가의 재산규모가 그 만큼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빈의 재산규모를 같은 시기의 다른 지역 사족가문의 예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체적이나마 17세기 순천 경주정씨가 경제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거부들의 예를 보면, 전라도에서도 17세기 후반 해남윤씨가 윤선도의 재산은 노비가 약 538구에 전답은 1,050 두락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³⁵⁾ 이것은 당시 전라도의 대표적인

32) 문숙자, 「조선시대 分財文記와 명대의 分家文書」(『고문서연구』 제29호, 한국고문서학회, 2006), 100쪽.

33) 이것은 김현영의 정치한 연구결과로서 16~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 여덟 가문의 재산을 분석한 통계인데,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예가 1679년의 전주이씨李文源家の 303 두락이며, 다음이 1643년의 제주양씨 양시익가의 250 두락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1999. 204~216쪽).

34) 이해준, 「호서 사족가문의 분재기 5례」, (『고문서연구』 제9·10호, 한국고문서학회, 1996), 300~301쪽.

35) 안승준, 「16~18세기 해남윤씨가문의 토지·노비소유 실태와 경영」, (『청계사학』 6, 한국정신문화연

巨富士族으로 알려진 예임으로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광형 3형제에게 나누어진 전답을 소재지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전답의 소재지별 소유자별 통계 (봉사조 전답 제외)

	長子衿			次子衿			三子衿			전체 통계		
	田	畓	계	田	畓	계	田	畓	계	田	畓	총계
소안리	91.2 (20.0)	0	91.2 (20.0)	112.7 (39.0)	7.8 (2.0)	120.5 (41.0)	17.6 (10.0)	62.0 (12.0)	79.6 (22.0)	221.5 (69.0)	69.8 (14.0)	2·91·3 (83.0)
장평리	20.4 (12.0)	19.2 (5.3)	39.6 (17.3)	27.6 (8.5)	139.0 (25.0)	166.6 (33.5)	67.6 (21.0)	64.3 (15.0)	131.9 (36.0)	115.6 (41.5)	222.5 (45.3)	3·38·1 (86.8)
도리	0	81.2 (20.0)	81.2 (20.0)	0	73.6 (14.5)	73.6 (14.5)	0	29.8 (9.0)	29.8 (9.0)	0 (0)	184.6 (43.5)	1·84·6 (43.5)
해촌리	20.8 (10.0)	100.8 (25.5)	121.6 (35.5)	0	33.4 (9.0)	33.4 (9.0)	2.6 (1.0)	69.1 (14.0)	71.7 (15.0)	23.4 (11.0)	203.3 (48.5)	2·26·7 (59.5)
별량리	0	30.7 (7.0)	30.7 (7.0)	0	0	0	0	19.0 (6.0)	19.0 (6.0)	0 (0)	49.7 (13.0)	0·49·7 (13.0)
상이사리	0	12.8 (3.0)	12.8 (3.0)	13.2 (3.0)	168.8 (31.5)	182.0 (34.5)	0	0	0	13.2 (3.0)	181.6 (34.5)	1·94·8 (37.5)
주암리	0	26.4 (6.0)	26.4 (6.0)	0	0	0	0	0	0	0	26.4 (6.0)	0·26·4 (6.0)
황전리	3.4 (8.0)	244.2 (35.0)	277.6 (44.0)	0	49.8 (8.0)	49.8 (8.0)	107.2 (22.5)	206.3 (33.3)	313.5 (55.8)	140.6 (30.5)	500.3 (76.3)	6·40·9 (106.8)
하이사리	0	29.5 (6.0)	29.5 (6.0)	0	0	0	0	0	0	0	29.5 (6.0)	0·29·5 (6.0)
서면리	0	0	0	0	0	0	0	72.0 (11.0)	72.0 (11.0)	0 (0)	72.0 (11.0)	0·72·0 (11.0)
초리방(남원)	38.6 (4.2)	125.2 (31.5)	163.8 (35.7)	0	8.5 (2.0)	8.5 (2.0)	0	0	0	38.6 (4.2)	133.7 (33.5)	1·72·3 (37.7)
고달방(남원)	0	26.5 (5.5)	26.5 (5.5)	38.8 (2.9)	200.1 (43.2)	238.9 (46.1)	99.9 (6.9)	166.1 (36.8)	266.0 (43.7)	138.7 (9.8)	392.7 (85.5)	5·31·4 (95.3)
전지역	2·04·4 (54.2)	6·96·5 (144.8)	9·0·0·9 (200.0)	1·92·3 (53.4)	6·81·0 (135.2)	8·73·3 (188.6)	2·94·9 (61.4)	6·88·6 (137.1)	9·83·5 (198.5)	6·91·6 (169.0)	20·66·1 (417.1)	27·57·7 (586.1)

* 상위의 수치는 結·卜·束을 나타낸 것이며, ()안의 수치는 토지면적의 斗·升落을 나타낸 것.

순천지역의 10개리와 남원지역의 2개방에 걸쳐 모두 12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12개 坊里들은 18세기 중엽의 지방행정구획 변천과정에서 모두 면 단위로 그 명칭이 바뀐 지역들이다. 위에서 순천부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소안리·장평리·도리·해촌리의 4개지역이며, 순천부 전체인 18개리 가운데 정빈가의 토지는 10개리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심부 4개지역에 전체의 약 43%에 해당하는 272.8두

의 전답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는 106.8두의 전답이 황전리에 있었으니, 이곳은 전통적인 평야지역으로서 문전옥답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그런데 순천지역에 소재한 전답분포 상황으로 볼 때,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읍내에서 가까운 해안지역 용두리·울촌리 등지에는 토지가 전혀 없거나, 해안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양리·하이사리에서 보는 것처럼 극히 적은 양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17세기 전반의 시점에서, 오늘 날과는 달리 해안지역 개발이 거의 이루지지 못했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실정과 관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3형제의 소재지별 토지분할 경향을 보면, 장남 광형의 경우에는 주암리·황전리·해촌리에, 차남 이형에게 읍내를 중심으로 상이사리에, 삼남 우형에게 읍내와 서면리·황전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답이 배분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그들이 소유하여 관리했던 재산이란 점에서 그들의 생활터전 및 주된 근거지가 그들 지역이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정광형 3형제의 토지가 남원에 133두락(전 14두, 답 119두)이나 있었던 것은 정빈의 母邊傳來에 의한 재산이었다. 앞에서 말한 외조부모 봉사와도 관계된 그 토지가 남원지역에 소재했던 까닭은 정빈의 외조부인 趙善種의 조부(趙智崑 ; 생몰 불명)가 남원의 남원양씨가문에 장가들어 그곳에 기반을 두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정읍현감을 지낸 사대부 신분으로서 남원에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³⁶⁾ 그의 가산을 물려받은 선종이 후사없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재산의 일부가 둘째 딸(정빈의 모친 순창조씨)에게 유전된 것이 결국 정빈에게 전래되면서, 아울러 외손봉사로 이어진 것이다. 순창조씨(1639~1615)는 생전에 정빈이 봉양하였으니 그가 狼川縣監으로 재임하던 기간중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³⁷⁾

정빈가의 전답 1/4에 해당되는 모변의 남원소재 토지는 3형제에게 각기 40~50두락에 가까운 재산으로 상속되었다. 米作地인 밭이 85%를 차지하는 그만한 규모의 토지를 가까운 남원에 두고 있었던 것은 경주정씨가 경제력을 그만큼 더 키워준 것이었다.

순천 경주정씨가문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서문의 규정대로 均分의 상속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주의를 요한다. 일견 전답의 면적으로 보면 3형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밀히 살펴 수확량으로 환산된 結負의 양으로 보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전답면적과 양에서 볼 때, 차자의 몫이 장자와 삼자의 몫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집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답의 소재지 위치가 어디인가의 문제도 균분의 원칙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순천부의 읍내 중심지(소안리와 장평리)의 전답 배분의

36) 『순창조씨세보』 春編 5면.

37) 『경주정씨가장』(정환규 찬) 「忠武衛副司直鄭公事實」.

내용을 보면, 장남의 경우엔 37두 3승(전 32두, 답 5두 3승)이었고, 차남에겐 74두 5승(전 47두 5승, 답 27두)이 주어졌으며, 삼남에겐 58두(전 22두, 답 36두)가 배분되었다. 즉 차남에겐 순천읍내에서도 중심지 고가의 전답이 유난히 많이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각자의 생활터전이나 그들의 근거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시 재산균분의 원칙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현상은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단 1束分の 전답일지라도 세밀하게 산출하여 배분하였다는 점이다.³⁸⁾ 이것은 농지가 정리되지 못한 당시의 실정에서 1승락지에도 미치지 못한 농지들이 산재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작은 필지들로 쪼개져 흩어진 토지들을 세밀하게 산출하여 지역별로, 전과 답으로, 또는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으로 구별하여 일일이 균분한 흔적이 정광형 3형제의 회회문기에 잘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이 문기가 방대한 지면에 작성된 요인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1680년 경주정씨가 회회문기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빈이 그의 손자 3형제에게 상속한 50여구의 노비와 600두락이 넘는 재산이 향리 순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그 대부분이 조상전래의 유산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몇 차례의 지방관을 거친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증식을 가능케 했을 지 알 수 없지만, 인진왜란기에 3형제의 차남으로 물려받은 정빈의 재산이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면, 결국 16세기 후반 가문을 크게 일으킨 그의 조부 정승복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남원지역에 있었던 적지 않은 모변의 재산이 더해지면서 정빈가문의 경제적 기반이 보다 탄탄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회문기에 뚜렷히 나타난 재산균분의 원칙은 조선전기의 관행이 17세기 전반기 순천지역에서도 그대로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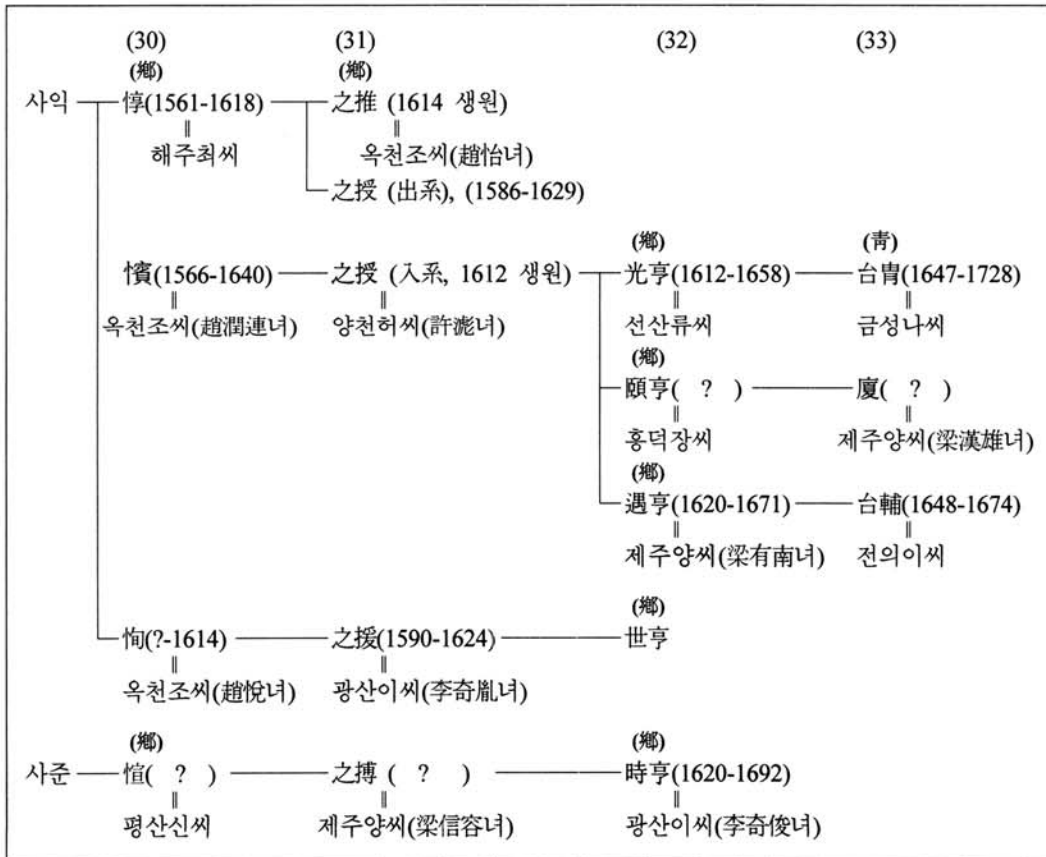
IV. 17세기 순천부 경주정씨의 사회적 위치

양란 이후 순천 경주정씨가문의 핵심인물이자 鄭光亨家の 경제적 기틀을 닦은 인물은

38) 斗數字卜의 명기가 분명한 이 문기에서 장자뫼으로 분집된 전답의 한 예를 보면, “(黃田里) 舊代前 父畝 五束·畝 1束·畝 4束·畝 1束·畝 1束·畝 2束·畝 1束·畝 7卜 8束·畝 4束(을 합하여) 四斗落只”라 기재하였으니, 작은 수확면적 단위를 얼마나 세밀히 산출하여 배분했는가를 알 수 있다.

정빈이었다. 그는 사익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지방관을 역임한 전진관인으로서 사실상 경주정씨가문의 대종을 계승한 위치에 있었다. 鄭肅의 순천입향 이후 승복을 이어 아들 思翊이 종통을 이었고, 사익의 장자인 惇이 그 뒤를 이어 승중자가 되었다. 그러나 돈이 아우 빈보다 20여년을 앞서 세상을 떠난 뒤 종가의 가세가 기울면서, 돈의 증손 守宗이 光州에 移居한 후 거둬진 立後 등으로 종가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후 38세(입향 12세) 敎安 대에 이르러 마침내 경주정씨 효송공파(참의공계)의 순천 大宗家系는 세보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³⁹⁾ 따라서 사익의 차자 빈과 그의 아들 之授를 이어 1680년 화회문기에 나타난 손자 광형과 증손 태주에 의해 종통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화회문기의 본가이기도 한 정빈의 가계를 중심으로, 17세기 순천의 경주정씨가문이 재지사족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표 4> 17세기 순천 경주정씨 家系와 通婚圖



39) 『경주정씨세보』(1927) 권7.

<표 4>는 정빈의 가계 4세를 중심으로 하여 형 돈과 아우 순, 그리고 숙부 思坡系의 일부를 圖示한 것이다. 뚜렷하게 나타낸 이름들이 화회문기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광형의 3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문기가 작성되었으므로 광형 대신 장자 태주, 이형 대신 그의 장자 廬, 우형 대신에 그의 부인 제주양씨가 참여하였으며, 광형의 3종제인 時亨이 門長으로서 증인이 되어 수결을 남겼다. 위의 표에서 (鄉) (靑)으로 표시된 것은 향안과 청금록에 올라 있는 인물을 나타낸 것이며, ||는 혼맥을 확인하기 위한 배우자 관계이다.

<표 4>에서 보듯이 빈은 형 돈의 차자인 지수를 양자로 들여 가계를 이었다. 지수는 1612년(광해 4) 27세 때 생원시에 2등 19인의 높은 석차에 입격하여 종가에 백패교지가 전하는 인물이다. 그의 형 지추 역시 1614년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니 문중에선 유일하게 생원형제가 배출된 예였다. 이 밖에도 경주정씨 30세에서 33세 간의 문중에서 사마시에 오른 인물로는 時亨의 아들인 昌齡이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역시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황의 아들 懷가 19세의 약관에 생원이 되어 순천향중에 門勢를 떨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순천부의 인물로서 16세기의 昇平四隱과 17세기의 順天八文章을 거론한 가운데 정사익이 승평사은의 일원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7세기의 순천팔문장⁴⁰⁾ 가운데 위의 3남 정우형과 차남 이형의 아들인 정하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주정씨 가문에서 숙질간의 두 인물이 당대 순천부에서 꼽히는 문장가들이었음을 입증해준 확실한 예이지만, 동시에 문중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향안과 청금록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하여 알아볼 차례이다. 조선시대 재지사족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 바로 향안과 청금록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순천부의 유향소에서 향안이 작성된 것은 임란 이전인 16세기의 일이다. 그 구체적인 사실들은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자세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⁴¹⁾ 현재 순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은 1605년(선조 38)에서부터 1721년(경종 1) 사이에 작성된 모두 아홉 건의 좌목이다. 그리고 순천향교의 청금록이 작성된 것은 1692년(숙종 18)부터 1761년(영조 37)의 靑衿隨

40) 순천팔문장에 꼽히는 인물들을 보면, 崔萬甲(전주최씨)·梁命雄(제주양씨)·朴時英(상주박씨)·정하(경주정씨)·鄭時灌(연일정씨)·黃一菴(장수황씨)·정우형(경주정씨)·許彬(양천허씨) 등의 8인이다(『강남악부』 「팔문장」).

41) 유희춘의 『미암일기』는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에서부터 1577년(선조 10) 5월까지 11년 간에 걸친 기록으로서, 여기에서는 순천의 유향소와 향회·향안·향란 등에 관련된 기사들이 전 기간에 걸쳐 실려있다. 유희춘의 고향이 순천이었고, 또한 당시 그가 순천경제소 당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향소에 관한 기록이 특히 많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1571년 2월 7일, 3월 8일, 8월 19일, 1573년 10월 2일 등의 기사에는 향안입록과 관련하여 일어난 향란사건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다.

行案까지이다. 따라서 경주정씨 30~33세의 인물들은 대체로 향안세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물론 표에 나타난 대로 광형의 장자인 台胄는 1692년의 「임신청금록」과 1695년의 「을해청금록」에 올라 있어 순천부 최초의 청금록에 등재된 인물이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태주의 아우 台有(1649~1708) 역시 형과 함께 임신·을해 양년의 청금록에 입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태주 이후의 세대들이 후속 청금록에 올라 있는 것은 물론이다.

임란 직후에 작성된 1605년의 향안에는 子弟秩을 포함하여 순천의 사족 44명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여기엔 옥천조씨(11)·경주정씨(7)·광산이씨·목천장씨·양천허씨가 각각 4명, 그리고 상주박씨가 3명 순으로 입록되어 있다. 경주정씨 7명은 표에 나타난 빈과 형돈의 부자 및 사준의 장자 선, 그리고 사준·사횡·사정 3형제가 모두 올라 있다. 거의 대부분이 임란 유공인물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사횡·사정·빈·선·지추 등은 1623(인조 1)년의 향안에도 입록되었는데, 사횡 형제와 조카 선은 고인(仙)으로 올라 있다. 이 때의 좌목에 빈은 鄉長으로 표기되어 있다. 빈은 1640년(인조 18) 7월의 좌목에도 등재되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해인지라 仙으로 입록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 경주정씨 32세들이 등재되기 시작했으니 빈의 장손인 광형, 恂의 손자 世亨 및 斗亨·運亨 등의 족친들이 사준의 차자인 懷와 함께 입록되었다. 광형은 1640년 10월과 1643년(인조 21) 좌목에까지 3회에 걸쳐 거듭 올라 있으며, 두 아우 이형·우형은 1669년 좌목에 時亨과 함께 입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표 4>에 나타난 경주정씨가계의 인물들 대부분이 순천부 향안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의 가계도에 나타난 경주정씨가의 통혼권을 살펴보면 조선후기 순천지방의 사족 사회에서 이루어진 혼맥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순천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으로 알려진 이른 바 ‘조정양장허리박’의 7성 8문은 향안이나 청금록에서 뿐만 아니라 각 문중의 세보상에서도 집중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위에 보이는 옥천조씨·광산이씨·제주양씨·양천허씨 등이 바로 이 지역의 향권을 주도했던 蓄姓 사족가문이었다. 경주정씨 순천대종의 정점에 있었던 圃堂 정사익도 두 아들 빈과 순, 장손 지추 등과 함께 옥천조씨 가문의 사위였다. 위의 통혼관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주양씨 신용·유남·한웅 3대와의 결연이다. 부사를 지낸 신용은 양팽손의 증손으로서 제주양씨 순천 입향조이며 『강남악부』에 그의 행적이 소상한 인물이다. 판사를 지낸 유남은 신용의 장자이며, 한웅은 그의 셋째 아들이자 신용의 손자이다. 제주양씨 가문은 양란 직후에 순천에 입향했음에도 불구하고 1740년 향안에서부터 입록되기 시작한 가문이다.

경주정씨 31,32세인 지원·시형과 통혼관계를 맺은 광산이씨 가문은 임란 직전 순천에 입향한 뒤 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휘하에서 군공을 세운 다음, 난후에 순천의 저성명문의 하나로 부상한 집안이다. <표 4>에서 보는 奇胤과 奇俊은 이 집안의 형제간으로 1605년 향안에서부터 함께 입록된 인물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기준은 『강남악부』 「노량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7세기 순천향중에서 펼쳐진 경주정씨가 사회적 관계를 이와 같이 살펴보면 재지사족 사회에 뿌리를 내린 확고한 기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시 일가의 인사들이 관내의 전라좌수영에 집단적으로 자원종군하여 군공을 세움으로써 뚜렷히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 그 첫째였고, 다음은 공훈에 따른 관직이 수반됨으로써 난후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함께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순천의 경주정씨는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문의 사회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였고, 제주양씨 3대와 이어진 통혼례가 말하듯이 재지사족들과의 결속을 보다 강화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조선후기 순천지방의 재지사족들은 대체로 16세기 초부터 來入하여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성장기반을 구축한 예가 주류였다. 기묘사화 직후 남원에서 新來한 경주정씨 효송공파(참의공계)의 가문 역시 그 한 예였다. 鄭雍의 입향 이후 아들 승복이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두루 거치고 도내 명현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순천도호부 사족으로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승복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아들 손자들이 관내에 있는 전라좌수영에 자원참전하여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승복의 셋째 아들인 사준을 주축으로 한 4형제와 子姪들이 펼친 집단적인 의병활동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임진장초』에 자세한 기록으로 남아있을 만큼 모두 뚜렷한 군공을 세웠다. 그들에겐 공훈에 따른 관직이 제수되었고, 관직을 바탕으로 더욱 확고해진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입향 3,4세에 이르러 경주정씨가문을 순천부의 명문사족이 되게 하였다. 1605년에 작성된 순천부 향안에 정사준·정사황·정사정·정돈·정빈·정선 등이 전현감·사평·봉사 등의 전현직 관인신분으로 다수 입록될 수 있었던 것이 곧 그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임란 직후 순천의 경주정씨가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정빈이었다. 그가 바로 1680년 화회문기의 재주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자세히 논급하였다. 임란 의병활동에서 세운 군공으로 군자감 봉사를 시작으로 관료에 오른 그는 사헌부 감찰·낭천현감 등을 거쳐 아산현감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7년전쟁에서의 화려한 전공과 지방관을 역임한 전직관료의 권위를 안고 향리에 돌아와 향장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우리가 검토한 1680

년의 회회문기는 사실상 정빈이 세상을 떠난 1640년경, 그의 손자들에게 이미 상속된 재산을 40년이 지난 훗날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기는 재주와 직접적인 상속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 2세 상속인들이 대행 회회하여 남긴 분재기였다.

회회문기에 나타난 정빈의 재산규모는 전답 635 두락(약 30결)과 노비 52구에 달하는 큰 재산이었다. 전답의 대부분이 향리 순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祖業의 유산이 주를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몇 차례의 지방관을 거친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증식을 이루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찍이 3형제의 차남으로 물려받아 관리해온 정빈의 재산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정빈의 재산은 결국 임란 이전에 가문을 크게 일으킨 그의 조부 정승복의 경제력이 그 토대가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남원지역에 있었던 적지 않은 모변의 전답이 더해진 것도 정빈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해준 한 요인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회회문기에 나타난 재산균분의 철저함은 조선전기의 일반적 관행이 양란 직후 순천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음을 보여준 예였다.

정빈의 가계를 중심으로 한 17세기 경주정씨가문은 안정된 경제력과 사회적 명성을 기반으로 재지사족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나갔다. 회회문기의 주체인 정광형 3형제가 모두 빠짐없이 향안에 입록되었을 뿐 아니라 광형의 아들 형제들 또한 거듭 청금록에 등재됨으로써 순천부 명문사족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양씨 3대와 의 連婚例로 보았듯이, 현지의 유력가문들과 한정된 통혼권을 형성함으로써 재지사족들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것은 17세기 경주정씨가문이 순천지역의 사족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그 만큼 탄탄하였음을 의미한다.

○ 투고일 : 2008년 7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7월 23일.

참고문헌

자료

- 『康熙十九年…和會文記』(1680, 경주정씨 참의공파 종가소장)
 『경주정씨족보』(1738, 松沙活字印)
 『중간승평지』(1729, 洪重徵 跋)
 『순천부읍지』(1792, 규장각도서 17434)
 『慶州鄭氏家狀』(18세기말~19세기초, 鄭煥奎 찬)
 『제주양씨대족보』(1803, 梁錫耆 跋)
 『순창조씨세보』(1872, 趙炫龍跋)
 『양천허씨세보』(1926, 許潤 跋)
 『경주정씨세보』(1929, 鄭瑋鎬 記)
 『梅谷集』(1959, 張一相 序)
 『순천씨족보』(1961, 순천향교 석판본)
 『광산이씨세보』(1988, 광산이씨청심당과보편수회편)
 이순신, 『난중일기초·임진장초』(사료총간 6, 조선사편수회편), 조선총독부, 1935.
 유희춘, 『미암일기초』(사료총간 8, 조선사편수회), 조선총독부, 1936.
 이순신, 『충무공전서』, 아세아문화사, 1984.
 조현범, 『강남악부』(국역본),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91.
 전라남도, 『전남의 향교』, 1987.

논저

- 순천향교, 『순천향교사』, 2000.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1999.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정구복, 『양반사회와 고문서』, 일조각, 2005.
 안승준, 「16~18세기 해남윤씨가문의 토지·노비소유 실태와 경영」, 『청계사학』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이해준, 「호서 사족가문의 분재기 5례」, 『고문서연구』 제9·10호, 한국고문서학회, 1996.
 정승모, 「조선시대 순천의 사림」, 『순천시사』 정치사회편, 순천시시편찬위원회, 1997.
 조원래, 「16세기 순천지방의 신흥사족」, 『조선시대사학보』 14, 조선시대사학회, 2000.
 문숙자, 「조선시대 分財文記와 명대의 分家文書」, 『고문서연구』 제29호, 한국고문서학회, 2006.

◎ 부록 : 1680년 鄭光亨 3형제 和會文記

(원문 사진 1)

康熙十九年
右文為家運不
而未及歲文為有知子即命和會成文而田番
庚戌年長中分得田番
矜為有等心一保其子成文為林
龍位奴婢及墓立段前日大分財時已為計出而或
已其於不準故亦為計為林 外祖父母王祭位
酸姑母王生時第三子家許給亦為保其子
為林其餘田民改家私膏膏亦給平物勿執為
志字沒有雜談另以天下正為齊月 他官居以此
未得一：花名如金不得執為主字後後花名
勿執為遺逃逃於後推尋後尋為執
龍位奴婢及墓立其二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以山春士牛生
葉宜奴林林其真三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收得金辛生也男三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外祖父母王祭位林林今仙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十六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升落及同里云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十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上九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及同里龍龍九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원문 사진 2)

當四十五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三十八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長子珍珍其真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保陽士牛生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奴牛奴牛已生七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保陽士牛生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二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或生保代玉一保其子成文為林 外祖父母王祭位
酸姑母王生時第三子家許給亦為保其子
為林其餘田民改家私膏膏亦給平物勿執為
志字沒有雜談另以天下正為齊月 他官居以此
未得一：花名如金不得執為主字後後花名
勿執為遺逃逃於後推尋後尋為執
龍位奴婢及墓立其二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以山春士牛生
葉宜奴林林其真三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收得金辛生也男三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外祖父母王祭位林林今仙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不文以安丁母生以花仁一
十六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升落及同里云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十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上九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及同里龍龍九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東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下五東田

(원문 사진 5)

田下三米 田下四米 田下五米 田下六米 田下七米 田下八米 田下九米 田下十米 田下十一米 田下十二米 田下十三米 田下十四米 田下十五米 田下十六米 田下十七米 田下十八米 田下十九米 田下二十米 田下二十一米 田下二十二米 田下二十三米 田下二十四米 田下二十五米 田下二十六米 田下二十七米 田下二十八米 田下二十九米 田下三十米 田下三十一米 田下三十二米 田下三十三米 田下三十四米 田下三十五米 田下三十六米 田下三十七米 田下三十八米 田下三十九米 田下四十米 田下四十一米 田下四十二米 田下四十三米 田下四十四米 田下四十五米 田下四十六米 田下四十七米 田下四十八米 田下四十九米 田下五十米 田下五十一米 田下五十二米 田下五十三米 田下五十四米 田下五十五米 田下五十六米 田下五十七米 田下五十八米 田下五十九米 田下六十米 田下六十一米 田下六十二米 田下六十三米 田下六十四米 田下六十五米 田下六十六米 田下六十七米 田下六十八米 田下六十九米 田下七十米 田下七十一米 田下七十二米 田下七十三米 田下七十四米 田下七十五米 田下七十六米 田下七十七米 田下七十八米 田下七十九米 田下八十米 田下八十一米 田下八十二米 田下八十三米 田下八十四米 田下八十五米 田下八十六米 田下八十七米 田下八十八米 田下八十九米 田下九十米 田下九十一米 田下九十二米 田下九十三米 田下九十四米 田下九十五米 田下九十六米 田下九十七米 田下九十八米 田下九十九米 田下一百米

(원문 사진 6)

十三上米 田下五米 田下六米 田下七米 田下八米 田下九米 田下十米 田下十一米 田下十二米 田下十三米 田下十四米 田下十五米 田下十六米 田下十七米 田下十八米 田下十九米 田下二十米 田下二十一米 田下二十二米 田下二十三米 田下二十四米 田下二十五米 田下二十六米 田下二十七米 田下二十八米 田下二十九米 田下三十米 田下三十一米 田下三十二米 田下三十三米 田下三十四米 田下三十五米 田下三十六米 田下三十七米 田下三十八米 田下三十九米 田下四十米 田下四十一米 田下四十二米 田下四十三米 田下四十四米 田下四十五米 田下四十六米 田下四十七米 田下四十八米 田下四十九米 田下五十米 田下五十一米 田下五十二米 田下五十三米 田下五十四米 田下五十五米 田下五十六米 田下五十七米 田下五十八米 田下五十九米 田下六十米 田下六十一米 田下六十二米 田下六十三米 田下六十四米 田下六十五米 田下六十六米 田下六十七米 田下六十八米 田下六十九米 田下七十米 田下七十一米 田下七十二米 田下七十三米 田下七十四米 田下七十五米 田下七十六米 田下七十七米 田下七十八米 田下七十九米 田下八十米 田下八十一米 田下八十二米 田下八十三米 田下八十四米 田下八十五米 田下八十六米 田下八十七米 田下八十八米 田下八十九米 田下九十米 田下九十一米 田下九十二米 田下九十三米 田下九十四米 田下九十五米 田下九十六米 田下九十七米 田下九十八米 田下九十九米 田下一百米

長子學生 鄭光亨 代子台曹示
 次子學生 鄭順亨 代子慶
 次子學生 鄭學妻 梁
 證門長幼學 鄭時亨
 筆執幼學 鄭台曹示

Abstract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 of Gyungju Jung
Family(慶州鄭氏家) of Suncheon in the 17th Century
- Witness of their Family History in the 16th Century and the Document
of Sharing Properties in the Year of GangHee(康熙)19 -

Jo, WonRa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ocial history of local areas as well as Suncheon in the late Choson Dynasty. The previous studies were primarily focused on the research of local aristocratic family in Suncheon and an aspect of their existence before and after Imjin-War (壬亂). But studies on economic foundation or real situation of landholding has not be done.

Recently, documents of Gyungju Jung family's sharing properties written in 1680s and appointment letters of Jung-Bin were found out, which made it possible for us to look into his family's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That is to sa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ocuments of sharing properties(和會文記) of the 1680s and the related ancient documents in order to examine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 of Gyungju Jung family(慶州鄭氏家) in Suncheon local aristocratic family society in the 17th century.

In the early 16th century, Gyungju Jung family who moved from NamWon to Suncheon, established the firm foundation as a local aristocratic famil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which many members of his family volunteered for military service at Jeolla Jwasoo-Young(全羅左水營). They deployed loyal troops movement as a group and they performed brilliant exploits at the battle. Their achievement enabled them to attain a local government position

Among them, Jung-Bin who has consecutively filled local officials played a important

* Professo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role in his family after the war. He bequeathed about 600 parches of fields including about 50 servants to his three grandsons. His all inheritance was equally distributed to his three grandsons.

We found that 333 parches of fields in NamWon area originally belonged to Jung-Bin's ones inherited from his mother sides, while the rest of assets were inherited from their ancestors. Except fields to perform the religious service for his mother's parents, his fields located in 10 countrysides, Suncheon and 2 countrysides, NamWon were evenly shared by calculating till the unit of a sok(束) in a small way.

In the 17th century, Gyungju Jung family in Suncheon could build a solid social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exploit of the war and stable economic strength. These local documents written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revealed that talented figures from the Jung family had been registered in Hyang-An(鄉案), and as they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aristocratic families through a way of marriage, they strengthen their foundation as a local noble family.

Keyword : Local aristocratic family, Gyungju Jung family, Jung Bin, Documents of sharing properties, Equal division, Hyang-An